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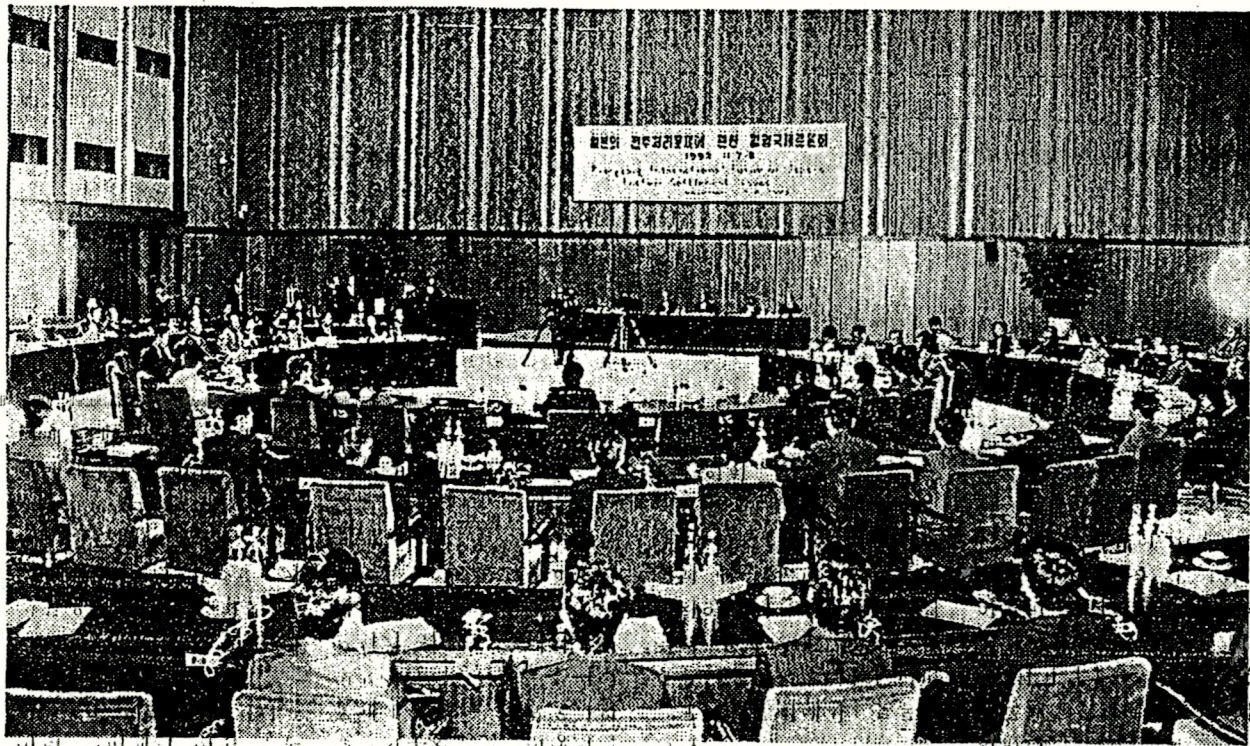
일제의 침략과 강점은 불법무도한 강도적행위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7, 8의 양일간에 걸쳐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우리 나라 법계, 학계, 언론계 일군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조선인추방본부대표들과 총련일군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추전국전략위원회와 일본의 전쟁책임자요젠퍼대표들, 유엔의 정복지구 일군들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들, 일본에 의한 팔라민위 군사적성노예피해자 특별조사단,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출판관계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오문환위원장의 개막연설이 있었다. 《중군위안부》에 관하여 그는 일본이 전후처리문제에는 피해국과 피해국사이의 물론 국제적인 정의와 양심, 세계평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로서, 세계적이며 광범적임을 뒤늦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과거에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평양~도쿄간 전송,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

저지른 죄행의 범죄적성격을 약화시키고 어물쩍해 넘기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도의적 책임을 따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이어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일문대사를 소개하고 소개사를 하였다.

그는 최근 《중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의 강제련행문제에 대한 세계적

심이 높아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는 부정의와 인권침해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서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및 전후처리와 전쟁책임 문제에 대한 일본국가와 일본인들의 양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 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일조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반세기동안이나 해결되지 않고있는 전후처리문

제를 풀어야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20명의 인사들이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중군위안부》, 강제징용피해자들도 증언을 하였다.

국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중군위안부》의 비인간성과 무효성에 대하여 논증하였으며 그 피해와 배상과 법적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토론회자들은 공권력에 의한 《중군위안부》의 강제련행과 제도화, 그 실

태그에 대한 국제법적책임과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강제련행, 강제노동의 실태와 일제에 의한 학살만행에 대해서도 폭로하였다.

국제토론회에서는 일본인의 과거죄행을 상충하는 역사자료들이 제출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분석한채 토론회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전

161에 게재)
(1975) 토
이
세
11월 11일

후처리문제에 관한
제토론회 보고서가
었다.
(보고서와 토
3면에 게재)

평양국제토론회가 있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에서

7, 8의 양일간에 걸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하여 빚어진 모든 과거죄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밝히는 의의깊은 마당이 되었다. 양일간에 여러 나라 학자, 변호사, 언론인들과 피해자들이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하여 폭로했다. 국제토론회에서는 《을사5조약》과 비법성과 무효성

효성을 논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중군위안부》의 강제행위와 그 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강제노동과 물적 약탈,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러 나라 대표들, 일본의 과거죄행 폭로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성 논증

토론자들은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성에 대하여 논증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김길진은 《을사5조약》은 일제가 이미 1904년 원로회의와 내각회의에서 강차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내조선명함을 수락한 기초에서 《제결》된 《조약》이며 그 《교섭》과 《조인》에 이르는 전과정이 무력적 강제와 협박으로 일관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그 사실적 자료를 열거하였다.

그는 당시 최고주권자의 인가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조약》은 철저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열강의 국가수반들에게 보낸 고종의 비밀전보와 친서가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그 무효성은 더욱더 증명되었다고 말하였다.

메이지대학 교수 윤노후규는 토론회에서 당시 일본은 1904년에 제정한 《일한합의서》에서 조선

에 대한 보호국지배를 인정하는 《제2차일영동맹조약》과 《포츠머스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변호사 도쓰카 에쓰로는 《제결》시점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 《을사5조약》을 전제로 한 《일한합방조약》은 사상무각이라고 지적하고 국제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조선지배권》법규는 모두 합법성이 없는것으로서 그것은 국제법상 외국에 의한 군사적령지배로 된다고 단언하였다.

아라시 조진은 효력이 없는 《보호조약》에 의해 위법적으로 식민지화되고 조선인민은 탄압, 차별에 의해 노예상태에서 살았으며 《중군위안부》들은 2중, 3중의 노예적취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을사5조약》의 효력 평가, 일본의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제로서 이에 상응한 해결책이 있어야만

장기어진 《중군위안부》범죄는 국제법상 여성들을 노예화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러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그들은 이 범죄가 조선민족살상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된 반인륜적대처라고 확언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1921년 《녀성아동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명한 때 21살미만의 일본녀성들에 대한 매매 금지조항은 넣으면서도 조선에서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실을 밝히고 20여만명의 《위안부》중 대부분이 10대의 조선녀성들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위안부》정책은 철저히 조선민족살상을 위한 은폐된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에 의한 필리핀의 군사적성노예피해자특별조사단 공동조장 로데스 인다이 사코르는 일본군의 위안소 또는 유계식치가 1932년에 제도화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 목적은 점령지에서의 병행, 징발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

에 달하는 녀성들에 대한 《항군》의 조직적인 강간과 집단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구 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어물쩍해 넘기려고 책동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증거자료가 나오기에 대한 우롱이며 희생자들과 피해생존자들을 또 다시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애당초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리 했으며 지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인정하고 안나오면 부정한 식의 태도를 보이고 지어는 국가적인 책임마저 부정하려고 하고있는

강제련행, 강제노동 등 인적, 물적 피해도 논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리종현은 600여만명의 조선인 강제동원들은 강제련행하여 노예와 같이 하대하고 혹사하였으며 100여만명의 학살하고 수십만명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일제의 만행은 조선인민을 민족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친고민족의 만행이며 한때에 대한 법적정당화책정에 관한

대 대하여 분격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본정부가 국제법적책임과 응분의 보상에 대해서는 일인만주도 없이 《나무적 및 쌍무적 협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는 데 대하여 지적하고 일본은 전후처리를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가장 뉘우치고 포악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한 만행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극악한 만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형범죄로서 국제법상 인권,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강제련행, 강제노동 등 인적, 물적 피해도 논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리종현은 600여만명의 조선인 강제동원들은 강제련행하여 노예와 같이 하대하고 혹사하였으며 100여만명의 학살하고 수십만명의 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일제의 만행은 조선인민을 민족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에서 감행된 친고민족의 만행이며 한때에 대한 법적정당화책정에 관한

토론자들은 또한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가장 뉘우치고 포악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한 만행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극악한 만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형범죄로서 국제법상 인권,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강제련행자 600여만명에 대한 강제지급, 미지불임금은 현재의 일본돈으로 6조원에 달한다고 폭로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박사 원종규는 일제는 조선의 왕릉을 비롯한 옛 무덤들과 성곽, 비석, 옛 건물과 시조물 등 역사 유적들을 파괴하고 고려자기, 리조자기, 무기류와 장구류를 비롯한 옛 무덤의 부장품과 도시 등 수십 만점에 달하는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간데 대해 폭로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강제대상물과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조선은행권》을 람발한 책임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경제적손실, 지난 조선전쟁개시에 공모하고 참가한 책임, 전후 조선적대정책책임에 대하여서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배상과 보상은 조선침략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으로부터의 국가 배상, 보상으로서 되어야 하며 피해자 자신들에 대한 개인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을 지냈던 일본이 유력사회의 위협이나 경제력을 동원하여 《조약》을 날조하거나 대령양진행

1993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국제토론회에는 《중군위안부》 및 대령양진행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전국련락협의회와 조선측 중앙본부, 일본에 의한 필리핀의 군사적성노예피해자특별조사단, 일본의 전쟁책임자 로엔터를 비롯한 구 일본의 전사자들을 조사하며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여 활동하고있는 아세아지역의 여러 단체, 대표들과 이류있는 학계, 민조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과거 일본이 지지른 잘못으로 하여 일본과 아세아의 여러 피해국들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그에 대한 책임의 인정과 사죄, 보상, 재발방지 등 과거청산문제가 이룩되여있을 시기에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중군위안부》 및 강제련행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23명의 대표들과 학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일본의 범죄적행위로 하여 심히 파괴된 국제적정의와 도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일본에 대한 아세아인민들의 원한과 불신의 감정을 가시고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나감에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깊은 주목을 돌려왔으며 그와 관련한 단체들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온데 기초한 앞으로의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대표들은 지난날 일본이 유력사회의 위협이나 경제력을 동원하여 《조약》을 날조하거나 대령양진행

무리죽음을 당하게 한것은 명백히 인도에 대한 죄로 된다는 강한 주장들이 표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들은 일본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역사 앞에 숨겨왔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후에는 진상 규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무인할수 없는 역사적사실로서 논증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고 직접 강박하여 날조한것이므로 국제관습법에 비추어 효력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구 일본정부와 군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군인에 《위안부》편리케도를 내오고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아세아녀성들 특히 조선녀성들을 강압리설과 권모술수로 끌어들여 성노예로 만들고 60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가혹한 노동과

지난 8월 일본군의 성노예화범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2차보고서에 일본부 강제성을 인정하지는 하였으나 기기에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제법적책임도 보상의사도 반영되어있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내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하여 국제적정의와 국제법에 따라 책임적으로 해결할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인민과 나아가서 아세아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잘된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실천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성노예화, 강제노예노동, 《정신대》, 집단학살 및 인적피해 등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모와 사실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공적인 사죄표시를 함으로써 국제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히 손상된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 즉 배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들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강점기간과, 약탈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도 응당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제가 파괴하였거나 약탈해간 문화재들도 보상하거나 현재 가지고있는것을 모두 반환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일본의 각급 학교 교과시들에 범죄진상을 정확히 서술하여 범죄의 재발방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전쟁책임을 추궁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상련대활동을 강화하고 유에이키구독회의 협력

지난 8월 일본군의 성노예화범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2차보고서에 일본부 강제성을 인정하지는 하였으나 기기에는 범죄사건에 대한 국제법적책임도 보상의사도 반영되어있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내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하여 국제적정의와 국제법에 따라 책임적으로 해결할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인민과 나아가서 아세아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잘된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 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실천적조치들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와 성노예화, 강제노예노동, 《정신대》, 집단학살 및 인적피해 등 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진모와 사실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공적인 사죄표시를 함으로써 국제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히 손상된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 즉 배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들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비법적인 강점기간과, 약탈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도 응당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제가 파괴하였거나 약탈해간 문화재들도 보상하거나 현재 가지고있는것을 모두 반환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일본의 각급 학교 교과시들에 범죄진상을 정확히 서술하여 범죄의 재발방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전쟁책임을 추궁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상련대활동을 강화하고 유에이키구독회의 협력

책임정의로 해결할것을 촉구 국제적정의와 국제법에 따라

평양국제토론회 보고서

김복신부총리가 평양국제

토론회에 참가자들은

다고 만하였다. 메이지대학 교수 운노 후쿠주는 토론회에서 당시 일본은 1904년에 체결한 《일한합의서》에서 조선의 독립과 영토완정을 보증하고 3국가의 조약체결 시 사전상호승인을 규정하고도 영토권을 소유한 국가주권자의 입장에서 조선

에서 《을사5조약》의 효력은 일본의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제로서 이에 상응한 해진책이 있어야만 조일 두 민족의 참된 우호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정부는 배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군위안부》문제, 일제의 학살만행론의

토론자들은 또한 공권력임과 일제의 학살만행에 의한 《중군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제도화, 그 실태, 그에 대한 국제법적책

은 침략지에서의 반항, 성병, 정탐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리효재는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남조선당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와 비인간적 범죄가 사실로 입증되는데도 그 배상과 보상책임을 묻지 않을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한일합정》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일제의 만행은 조선인민을 민족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밑에 감행된 친고미륵의 만행이며 인도에 대한 범죄집단살해방지에 관한 조약, 세계인권선언을 짓밟는 행위라고 낙인하였다. 메이지대학 교수 운노 후쿠주는 일제에 의한 강제연행자수는 아세아의 일본군침략지, 싸할린, 《만주》에서의 연행,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학도동원》 등을 포함하지 않고도 약 491만명 또는 50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 일본의 조선사

련행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복신부총리가 평양국제 토론회 참가자들을 만났다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김복신부총리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에 참가하고있는 아세

아지역의 여러 단체 대표들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오문현위원장 등을 포함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대하고 이르는것과 다에서 집단학살과 파괴, 학살, 방화, 강제수용, 포로병학대 등 수다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들을

일본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역사 앞에 숨겨왔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후에는 진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공개, 진심으로 되는 사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경계와 우려를 표시하고 일본이 진후 처리를 성급하게 할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많은 토론자들은

참가자들은 또한 전쟁범죄를 추궁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호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유엔인권기구등과의 협력을 적극 해나갈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회, 정당, 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이에 깊은 주목을 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부인이 단언히 다수를 차지하고있다》고 보고하고있다.

이거시 말하고있는 《특수부인》에 대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가진 유오대학 요시미 요시아끼교수는 《특무기반의 우선적인 이동화가를 받은것으로 보아 대다수는 조선인의 《위안부》였다》고 단정하면서 일본국가의 국제법상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정부가 기우 《중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금민 자료는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조선총독부》가 이를 방치해왔다는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하면서 정부의 조사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군위안부》에 《조선총독부》가 관여

이 등의 실태를 파악

남조선의 기록보존소에서 공문서 발견

《중군위안부》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깊은 관련을 나타내는 새로운 자료를 《공문서》가 지난 10월 29일에 부산에 있는 《한국》정부의 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중군위안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있었다는것을 표시해주는 첫 자료의 발견으로 당시 식민지 지배실태의 일단이 드러난셈으로 된다. 이 자료는 일본의 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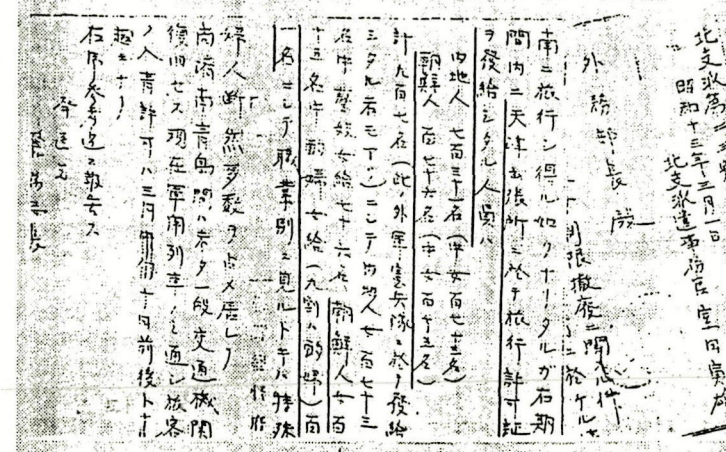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무어 지고있는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대표 쓰루가대학 아라이 상이찌교수)의 4명의 연구자들이 올해 7월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조선총독부》자료조사를 벌려 기록보존소에서 발견한것이다. 관련자료를 포함한 14집이 《쇼와 13년(1938년), 14년(1939년) 러린레규(동양)》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수록되어있다.

그중 《조선총독부》외무부소속의 중국북부지방 파견사무관이 외무부장에게 낸 보고문서 《제남(濟南) 지역의 제한철폐에 관한 건》을 보면 《조선총독부》는 사무관을 화북(華北)에 파견하여 《중군위안부》의 이동상황을 조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지적되어있다. 그중 조선인 115명이 있다고 지적되어있다. 그중 조선녀성은 작부(酌婦), 녀급(女給) 101명(9할은 작부)이라고 지적되어있었고 《직업별로 보려는 특수

엄격히 제한하고있었다. 제남에 려행하기 위해서는 군(특무기반)의 허가를 얻은후에 천진의 령사관에서 려행허가증을 받아야만 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군에서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일본인 731명, 조선인 176명(녀성 115명)이 있다고 지적되어있다. 그중 조선녀성은 작부(酌婦), 녀급(女給) 101명(9할은 작부)이라고 지적되어있었고 《직업별로 보려는 특수



기자회견을 가지는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관계자들



《중군위안부》의 이동상황을 조사한 《조선총독부》의 보고문서

후쿠오카 현내의 조선인강제연행자 총수 17만여명

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된 《특고》보고서에 명기

제2차 세계대전중에 후쿠오카현내의 탄광 및 공장 등에 강제연행당한 조선인노동자의 총수가 본격적으로 강제연행이 시작된 1939년부터 45년 6월말까지에 총 17만여명에 달하고있었다고 증명

하는 새로운 자료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이 자료는 일본의 항토사연구자가 이곳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발견한것이다. 당시 사상, 공안 부문을 단속하고 강제연행에 직접

관여한 《특고(특별고등경찰)》가 강제연행의 일대기집지였던 후쿠오카현전역의 동향을 정리한 통계인것만큼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은 《신빙성이 높고 자료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44년 7월에 정리된 《현정(県政)중요사항》속의 일부이다. 현청의 각 부서의 현안사항을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인바 내정부 및 토목부, 경찰부안에서 특별고등과가 《극비》로서 《이입(移入)반도인로무자에 관한 조사표》란 제목으로 보고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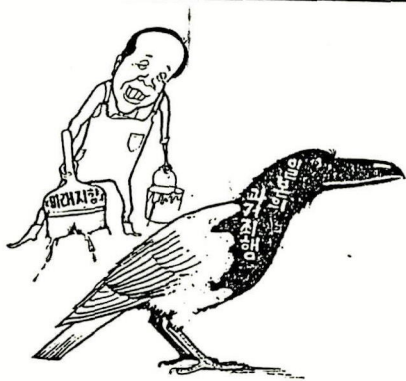
보고서는 1938년부터 43년까지의 현내의 취업상황을 정리한 《직업이동상황표》 및 외국인의 거주지수를 표시한 《외국인분포상황표》 등의 7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그속에서 이동상황표를 보면 38년도에 6만 105명이었던 현내의 조선

인이 전시중인 43년도에는 약 3배의 17만 2,199명으로 격증하였다고 되어있다. 직업종류도 광산노동자, 토건노동자, 공장노동자가 제일 많고 구(旧) 지꾸호탄전(炭田)에서의 광산노동자는 6배이상으로 늘어나 전시에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탄광현장에서 종사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44년 1월말현재의 《로무동원계획》에 의한 이입로무자사업장별조사표》에 의하면 탄광 5개소, 공장 15개소, 토건 5개소, 금속광산 4개소의 사업소명과 노동자수가 명기되어있다.

전시로무동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선사람을 연행하였다고 볼수 있는 《이입자》의 항목에서는 제 10만 5,700여명의 탄광로무자가 많고 토건, 공장 등을 포함하여 총 11만 3,061명이나 되고있다. 《도망자》의 항목은 5만 8,471명으로 되고있다. 또한 《발견제취업》도 7,500명이나 있어 당시 가혹한 노동조건과 함께 《특고》가 얼마나 단속에 피눈이 되고있었는가를 엿볼수 있다.



히사카

흑을 백으로